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9. 1 선고 2021가단539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 변호사 진현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2.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67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가. 사실관계

- 1) 익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건설업을 하는 B은 2016. 5. 2. 원고와 보증금액 38,400,000원, 보증기간 2021. 4.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B의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사전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7호).
- 2) 익산세무서는 2018. 3. 16.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B의 사업장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 3) B은 2020. 2. 14. 피고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B의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됨으로써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B에 대한 위 사전구상권은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가) 적극재산

순번	재산의 표시	가액(원)
1	이 사건 부동산	220,011,000
2	익산시 F아파트 G호	222,000,000
3	자동차 3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37,000,000
합계		479,011,000

나)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1	H조합	124,938,977
2	I 주식회사	187,566,000
3	J	82,000,000
4	대한민국(소관 : 익산세무서)	26,983,850
5	원고	34,560,000
6	피고	98,400,000
합계		554,448,82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J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H조합, I 주식회사, 익산세무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에 대한 98,4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일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채무초과상태는 물론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